

# 군인의 청력을 보호하자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교수 / **임 현 술**



소음의 정의는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치 않는 소리라고 정의하며, 물리적인 면에서는 불규칙음, 비주기적이고 고주파음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은 청력손실, 심리적 영향, 생리적 영향, 사회적 영향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군복무 중 발생하는 청력손실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군복무 관련 질병(Direct Service Connection)에 대하여 과거부터 기록하여 왔고 보상에 대한 기록이 있다. 군복무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불명예제대를 하지 않고 10%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평생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 받는다. 장애 보상이 되는 질병은 소음성난청을 비롯하여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뇌출혈, 뇌경색, 기관지확장증, 결석, 간경화, 심장염, 간질, 나병, 암,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 군복무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퇴역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하여도 추정군복무관련질병(Presumptive Service Connection)으로 장애보상 혜택을 받는다.

만성 질병, 열대 질병, 전쟁포로 관련 질병, 머스타드가스 관련 질병, 방사선 관련 질병, 한랭손상, 고엽제 관련 질병 및 걸프전쟁후군 등이 이에 속한다. 군복무 관련 질병에 대한 보상 통계에 의하면 소음성난청이 가장 많다. 군복무 중 사격 및 포격 소음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군인 시절 소음 노출에 의한 건강장애에 대하여 군복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례를 각종 뉴스를 통하여 접하게 된다. ‘포성 노출 난청과 이명

인정, '동원 예비군 사격 이명 및 난청 인정', '청각장애 40년 후 유공자 인정' 등과 같이 과거 소음 노출과 관련하여 최근에 인정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군인은 소음에 가장 많이 노출되지만 이에 대한 예방 조치가 가장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총과 대포소리는 강렬한 충격음이다. 총소리에 대한 소음 정도가 M-1 소총사격음은 75~90 dB, 카빈소총의 사격음은 75 dB이라는 보고도 있으나, M-1 소총사격음의 소음 수준은 거리별로 144~155 dB이라고 보고하였다. 야포는 180 dB, M-16 소총 사격음은 170 dB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므로 이러한 사격 및 포격에 의한 소음으로 소음성난청과 이로 인한 이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군인으로 징집되어 2~3년간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역하고 청력손실이 된다면 이는 참 애석한 일일 것이다. 더구나 젊은 나이여서 청력손실이 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남자 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고 그들의 4분법에 의한 평균 청력 손실치와 4,000 Hz에서 청력역치를 구하고, 이를 군복무 여부와 사격 및 포격 소음 노출 여부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군복무 시 사격 및 포격 훈련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들은 군대 제대 후 소음성난청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회는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 소음 부서에 입사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대개 건설한 기업일수록 채용신체검사에서 배치 전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정밀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어느 정도 난청 소견을 보이면 입사를 시키지 않는다.

서비스업 사업장의 60%(3/5), 제조업 사업장의 82%(9/11)가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부분 사업장이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청력소실치가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취업을 시키지 않고 있다. 국가를 위하여 2~3년 간 군복무 후 난청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도 못한다면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자신이 인지도 못하는 사이에 국가를 위한 희생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되 돌아오는 셈이다. 군대에서 약간의 난청이 있는 사람이 소음에 노출이 더 되는 열악한 조건의 사업체에 취직하여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결국에는 심한 소음성난청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이러한 난청자가 취업이 안 되는 것은 기업의 산업재해(또는 직업병) 발생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일종의 배치 전 건강검진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소음 작업장에 난청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검진의 취지이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배치 전 건강검진도 안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건설한 기업은 법을 제대로 준수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소음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사용하면 청력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 소음성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렇게 채용하는 이유는 같은 노출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정상인보다는 청력손실이 있는 근로자에서 난청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할 규제 또는 재정적 부담이 많다는 것인데, 이렇다면 난청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군복무를 인한 청력손실자의 취업 문제는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군복무 시는 철저히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고, 난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여야 하며, 제대 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증해주어야 한다.

소음성난청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학적 대책으로 소음원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대 내 현실적인 여건상 쉽지는 않겠지만 소음원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음 노출이 불가피 한 경우 귀마개나 귀덮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음보호구는 군대에서 항상 착용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사격 및 포격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행히 최근 예비군 훈련 시 사격장에서 귀마개를 착용하게 한 일은, 늦었지만 국가가 이제야 소음성난청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런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은 후에 사회에서도 작업 시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군에 입대 시 정밀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소음 소실치에 준하여 적정 배치를 하고 군대를 제대할 때도 정밀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필요 시 보상을 하여야 나중에 소음성난청과 관련한 보상 청구가 줄어들 것이다. 군대에서도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며, 올바른 사후관리를 위해 소음성난청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군에서 청력 및 이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 국가를 위하여 일한 군인들이 제대 후에 더 나은 조건에서 근무하기보다 오히려 군복무에 의한 소음성난청 등 장애로 인하여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게 되고 소음성난청을 포함한 질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1. 김현, 조수현, 임현술. 군복무시 사격 및 포격훈련에 의한 소음 폭로력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1991;24(1):86-92
2. 임현술, 김 현, 정해관. 철강공장 근로자 중 난청 유소견자의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2;4(2):190-198
3. 임현술. 미국 퇴역군인과 군복무관련 질환. 동국의학 2002;9(1):71-101
4. 정해관, 임현술. 채용 시 건강진단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5;7(2):332-346